

개인금융채권 추심·추심위탁·양도에 관한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금융채권 추심·추심위탁·양도에 관한 규정」

2. 제·개정 이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 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추심의 착수 통지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 폐지 반영
- 나. 추심연락의 유예사유, 추심연락 유형·수단 제한, 추심 위탁 통지의 내용 관련 변경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4년 11월 5일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 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김한아 차장 (happy84@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3

○ 팩스번호 : 0505-036-0167

붙임. 개인금융채권 추심·추심위탁·양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개인금융채권 추심 · 추심위탁 · 양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공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공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가 상환되도록 추심해야 한다. ③ 공사는 추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하며, 개인금융채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④ 공사는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저해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추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공사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문제를 개인금융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5조(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공사는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과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반영
제8조(추심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된다. 1. ~ 3. (생략)	제8조(추심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된다. 1. ~ 3.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13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u> 사실이 확인된 개인금융채권 5. <u>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채무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출자·출연·투자한 회사에</u>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아직 채무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6. (생략) 7. <u>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개인금융채권</u> 8. <u>사회부조 및 생활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무자임이 확인된 개인금융채권</u> 9. (생략)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u> 사실이 확인된 개인금융채권 5. <u>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자·투자한 회사에</u>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아직 채무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6. (현행과 같음) 7. <u>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u>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개인금융채권 8. <u>공공부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u> 9. (현행과 같음)	
제9조(추심의 착수 통지) 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할 경우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u>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 4. (생략) 5. <u>추심 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화번호 포함), 채무조정, 분쟁조정,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u>	제9조(추심의 착수 통지) 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할 경우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u>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 4. (생략) 5. <u>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u>	시행령 제14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6. (생략) 7. <u>채권추심법 제8조의2에 따른 대리인 선임 관련</u> 사항 <u><신설></u> ② <u>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해야 한다.</u> ③ (생략)	6. (생략) 7. <u>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u> 관한 사항 8. <u>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u> ② <u>삭제 (2024.00.00.)</u> ③ (현행과 같음)	
<u>제10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u> (생략) ② 추심연락이란 <u>추심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거소, 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u>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1. <u>약관,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u> 해야 하는 사항의 통지 2. <u>개인금융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u> 3. <u>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1일 1회만 제외하며 1회 초과 시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한다)</u>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한다.</u> 1.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u>제10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u> (현행과 같음) ② 추심연락이란 <u>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u>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1. <u>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u> 2. <u>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u> 3. <u>삭제 (2024.00.00.)</u> ③ <u>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u>	시행령 제15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u>부채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다만,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하며 2회 초과 시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한다)</u>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u>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u>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신설> ④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을 여러 명이 추심하는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u>추심하기 위해 연락한 횟수</u>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공사가 동일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다수의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한 경우 개인금융채권별로 달리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한 어느 한 채권의 추심연락은 다른 채권의 추심연락을 겸한 것으로 보고 추심연락 횟수를 계산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u>개인금융채무자의 부채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7일에 2회</u>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u>채무 변제 촉구</u>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1일에 2회 3. <u>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u> ④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을 여러 명이 추심하는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u>추심연락 횟수</u>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공사가 동일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다수의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한 경우 개인금융채권별로 달리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한 어느 한 채권의 추심연락은 다른 채권의 추심연락을 겸한 것으로 보고 추심연락 횟수를 계산한다.	
<u>제11조(추심연락의 유예)</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공사에 해당 사실을 증빙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추심연락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 기간은 3개월 이내로 공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합의한 기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u>	<u>제11조(추심연락의 유예)</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u>	시행령 제16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1. <u>개인금융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u> 2. <u>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u> 가. <u>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고,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한다)</u> 나. <u>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혼인, 장례(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u>있다.</u> 1. <u>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u> 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u> 가. <u>개인금융채무자</u> 나. <u>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u> 다. <u>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u> 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u> 가. <u>개인금융채무자</u> 나. <u>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u> 4. <u>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u> 5. <u>제2호~제4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현행	개정안	비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다. 1. <u>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가. <u>3개월 이내 7일 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u> 나. <u>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u> 다. <u>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내 변경될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u> 라. <u>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u> 2. <u>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거짓 주장하여 추심연락 유예를 요청한 경우</u> <u><신 설></u> <u><신 설></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다. 1. <u>3개월 이내 7일 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u> 가. <u>삭제 (2024.00.00.)</u> 나. <u>삭제 (2024.00.00.)</u> 다. <u>삭제 (2024.00.00.)</u> 라. <u>삭제 (2024.00.00.)</u> 2. <u>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u> 3. <u>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내 변경될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u> 4. <u>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u>	
<u>제12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u> ① <u>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u> 1. <u>추심연락을 금지하는 특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추심연락을 제한. 이 경우, 추심연락 제한 시간은 1주에 28시간 이하로 한다.</u>	<u>제12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u> ① <u>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u> 1. <u>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u>	시행령 제17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2. <u>특정 주소(주소지, 직장 모두 포함)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의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시밀리번호로의 모사전송 등의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추심금지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제한. 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다.</u>	2. <u>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u> 가. <u>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u> 나. <u>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u> 다. <u>개인금융채무자가 전화번호로 문자전송</u> 라. <u>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자우편주소로 전송</u> 마. <u>개인금융채무자가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u>	
② <u>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추심연락 제한에 응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 제한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추심제한 기간 중에도 추심연락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u> 1. <u>대출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u> 2. <u>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u> 3. <u>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u>	② <u>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u> 1. <u>대출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u> 2. <u>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u> 3. <u>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u>	

현행	개정안	비고
우 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 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 이내 7 일 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u><신설></u>	우 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 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 이내 7 일 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u>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 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u>	
제15조(추심 관련 법령준수)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5조(추심 관련 법령준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공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공사와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u>	시행령 제6조 반영
제20조(<u>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담당 부서</u>) ① 공사는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u>추심 위탁 담당부서</u>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추심 위탁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추심 위탁의 통지에 관한 <u>업무</u> (<u>별지 제1호서식</u>) 2. ~ 3. (생략) 4. 개인금융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u>관련 법령 등</u>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업무 5. ~ 7. (생략)	제20조(<u>전담조직 및 담당업무</u>) ① 공사는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u>전담조직</u>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공사는 전담조직을 채권추심위탁업무에 관한 충분한 업무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u> ② 추심 위탁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추심 위탁의 통지에 관한 <u>업무</u> 2. ~ 3. (현행과 같음) 4. 개인금융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u>개인채무자 보호법이나 채권추심법</u>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업무 5. ~ 7.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26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u><신설></u>	<u>제21조의2(추심 위탁의 제한)</u> 공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해야 한다.	법 제26조 반영
제22조(채권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기준) ① 공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2조(채권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기준) ① 공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u>채권추심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감독규정 개정 대비
제23조(채권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방법) ① ~ ② (생략) ③ 공사는 채권추심회사와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평가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23조(채권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방법) ① ~ ② (생략) ③ <u>삭제 (2024.00.00.)</u>	규정 제24조의3으로 대체
제24조(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계약) 공사는 채권추심회사와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절차·방법 6. <u>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u> 7. <u>채권추심회사</u>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u>채권자가</u> 수탁자에게 통	제24조(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계약) 공사는 채권추심회사와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절차·방법 6. <u>삭제 (2024.00.00.)</u> 7. <u>수탁자의</u>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u>공사가</u> 수탁자에게 통지할	시행령 제24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8. <u>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u> 9. <u>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추심실적 인정범위</u> 10. <u>채권추심활동 및 법적절차 진행 소요비용 부담</u> 11. <u>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u> 12. <u>변제금 입금방법, 입금계좌, 추심대금 인도방법 및 입금 기한</u> 13. <u>위탁받은 개인금융채권의 해지 및 반환 등 변경에 관한 사항</u> 14. <u>성실의무,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중복추심의 위임금지에 관한 사항</u> 15. <u>계약 효력발생일 및 약정기간, 계약변경·해지에 관한 사항</u> 16. <u>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 등</u> 17. <u>제23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회사에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u>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8. <u>삭제 (2024.00.00.)</u> 9. <u>추심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u> 10. <u>추심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u> 11. <u>삭제 (2024.00.00.)</u> 12. <u>변제금 지급방법 및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u> 13. <u>삭제 (2024.00.00.)</u> 14. <u>삭제 (2024.00.00.)</u> 15. <u>삭제 (2024.00.00.)</u> 16. <u>삭제 (2024.00.00.)</u> 17. <u>삭제 (2024.00.00.)</u>	
<u><신 설></u>	<u>제24조의2(추심 위탁 예정 통지)</u> ① 공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추심 위탁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시행령 제23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제1항에 따른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 추심 위탁 예정일 - 추심 수탁 예정자 -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법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법 제3장에서 정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내용과 그 행사 방법 -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설>	제24조의3(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책임) - 공사는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공사는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 제25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u>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u> <u>2. 위반 횟수</u> <u>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u> <u>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u>	
제27조(채권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 ① <u>채권양도 업무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채권양도의 방식과 그 외의 채권관리 방식(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간의 비용과 편익을 명확히 비교해야 한다.</u> ② (생략)	제27조(채권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 ① <u>공사는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의 방법으로 관리·회수하는 방식과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회수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u> ② (생략)	
제31조(양도 제한) 공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개인금융채권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u>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권추심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채권</u> 나.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u>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u>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다. <u>소멸시효 완성채권</u>	제31조(양도 제한) 공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개인금융채권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u>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u> 나.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u>명의도용·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u>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다. <u>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u>	시행령 제9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u>해 출자투자한 회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u> (1) <u>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u> (2) <u>「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u> (3) <u>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u>	
제34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공사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u>개인금융채권</u>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34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공사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u>개인금융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u>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한다. 1. <u>「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u> 2. <u>「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금융채권</u>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35조(양도 통지) ① 공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되었거나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2호서식)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5.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도 예정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된다는 사항 6.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7.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제35조(양도 <u>예정</u> 통지) ① 공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되었거나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2호서식)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5. <u>삭제 (2024.00.00.)</u> 6. <u>삭제 (2024.00.00.)</u> 7. <u>삭제 (2024.00.00.)</u> ② <u>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u> 1. <u>삭제 (2024.00.00.)</u> 2. <u>삭제 (2024.00.00.)</u>	시행령 제10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주소가 적혀 있지 않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개인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u><신설></u> <u><신설></u>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u><신설></u>	<u>부칙 (2)</u> <u>이 규정은 2024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
■ [별지 제1호서식] 채권추심 위탁 예정 통지 공사는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을	■ [별지 제1호서식] 채권추심 위탁 예정 통지 공사는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을	

현행	개정안	비고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였음을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table><tr><th rowspan="2">채권자</th><th colspan="4">채무금액(원)</th><th rowspan="2">최종상환일</th><th rowspan="2">연체기간</th></tr><tr><th>원금</th><th>이자</th><th>기타</th><th>소계</th></tr><tr><td>한국주택금융공사</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상기 내용은 20 . . .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개인금융채권 위탁 예정일 : 20 . . . 3. 수탁 예정인(채권추심회사) <table><tr><th>채권추심회사명*</th><th>주소</th><th>연락처</th></tr><tr><td></td><td></td><td></td></tr></tabl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업자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및 방법 : <붙임1> 참조 5. 귀하는 상기 채무조정 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본 통지서 수령(도달) 후 5 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을 경우 본 통지서 내용에 따라 채권 추심을 위탁합니다. 6. 소멸시효 완성여부 : ㉠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금액(원)				최종상환일	연체기간	원금	이자	기타	소계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연락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였음을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table><tr><th rowspan="2">채권자</th><th colspan="4">채무금액(원)</th><th rowspan="2">최종상환일</th><th rowspan="2">연체기간 (대위변제일)</th></tr><tr><th>원금</th><th>이자</th><th>기타</th><th>소계</th></tr><tr><td>한국주택금융공사</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상기 내용은 20 . . .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개인금융채권 위탁 예정일 : 20 . . . 3. 수탁 예정인(채권추심회사) <table><tr><th>채권추심회사명*</th><th>주소</th><th>연락처</th></tr><tr><td></td><td></td><td></td></tr></tabl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업자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및 방법 : <붙임1> 참조 <삭 제> <삭 제> <삭 제>	채권자	채무금액(원)				최종상환일	연체기간 (대위변제일)	원금	이자	기타	소계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연락처				시행령 제23조 반영
채권자		채무금액(원)						최종상환일	연체기간																																									
	원금	이자	기타	소계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연락처																																																
채권자	채무금액(원)				최종상환일	연체기간 (대위변제일)																																												
	원금	이자	기타	소계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연락처																																																

현행	개정안	비고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u>7. 기타 채무자·채권자의 권리·의무 및 채무자의 권리구제방법 등 : <붙임2> ~ <붙임4> 참조</u>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88-811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u>5. 채권추심자의 의무 및 채무자의 권리행사방법 등 : <붙임2> 참조</u>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88-811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전화번호 : 1688-8114)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예: 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붙임2> 채권추심 관련 안내사항 □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 채권추심자에 대한 신분확인 증표 제시 요구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시 -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사는 당 신용보증 관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업무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 실시 ▶ 채무대납의 제의 또는 대부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 권유 ▶ 현금의 수령 또는 채권추심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	표현 정비 시행령 제23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⑥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소멸시효란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일부상환 조건으로 원금감면 등을 권유하는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등에서 정한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현행	개정안	비고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㉓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귀하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귀하는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u>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내용과 권리행사방법</u>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7일에 2회 ▶ 개인금융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채무 변제 측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1	

현행	개정안	비고
	<u>일에 2회</u> ▶ <u>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측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u> - <u>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또는 3개월 이내의 합의한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u> ▶ <u>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u> ▶ <u>개인금융채무자, 그 직계존·비속,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중 하나가 사망하였거나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동일한 사유로는 1회에 한함)</u> ▶ <u>개인금융채무자, 그 직계 존·비속 중 하나가 혼인하는 경우(동일한 사유로는 1회에 한함)</u> - <u>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다음의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u> ▶ <u>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u>	

현행	개정안	비고								
	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 연락 ▶ 다음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①과 ②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①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②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③ 개인금융채무자가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④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 ⑤ 개인금융채무자가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붙임3> (생략)	<붙임3> (삭제)									
<붙임4> (생략)	<붙임4> (삭제)									
■ [별지 제2호서식] 채권양도 예정 통지 <table><tr><td>수신인주소</td><td>홍길동(00.00.00) 귀하</td></tr><tr><td>주소</td><td>(우편번호) 주소 동, 부속 주소</td></tr></table>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년월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인주소	홍길동(00.00.00) 귀하	주소	(우편번호) 주소 동, 부속 주소	■ [별지 제2호서식] 채권양도 예정 통지 <table><tr><td>수신인주소</td><td>홍길동(00.00.00) 귀하</td></tr><tr><td>주소</td><td>(우편번호) 주소 동, 부속 주소</td></tr></table>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년월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인주소	홍길동(00.00.00) 귀하	주소	(우편번호) 주소 동, 부속 주소	
수신인주소	홍길동(00.00.00) 귀하									
주소	(우편번호) 주소 동, 부속 주소									
수신인주소	홍길동(00.00.00) 귀하									
주소	(우편번호) 주소 동, 부속 주소									

현행	개정안	비고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전·제공할 예정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 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u>있습니다(단,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의 사유 및 공사 내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u> <u>채무조정 요청의 절차·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u> 양도예정채권 명세 (20 기준) 소멸시효 완성여부: 부 (단위: 원) <table><tr><th>보증과목</th><th>보증번호</th><th>대위변제금액</th><th>대위변제잔액</th><th>손해금</th><th>법적절차비용</th><th>비고</th></tr><tr><td>보증과목</td><td>보증번호</td><td>대위변제금액</td><td>대위변제잔액</td><td>손해금</td><td>가지급금</td><td></td></tr></table>	보증과목	보증번호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비고	보증과목	보증번호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가지급금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전·제공할 예정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 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u>있습니다. 채무조정의 조건과 요청 절차·방법은</u>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u>있습니다.</u> 양도예정채권 명세 (20 기준) 소멸시효 완성여부: 부 (단위: 원) <table><tr><th>보증과목</th><th>보증번호</th><th>대위변제금액</th><th>대위변제잔액</th><th>손해금</th><th>법적절차비용</th><th>비고</th></tr><tr><td>보증과목</td><td>보증번호</td><td>대위변제금액</td><td>대위변제잔액</td><td>손해금</td><td>가지급금</td><td></td></tr></table>	보증과목	보증번호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비고	보증과목	보증번호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가지급금		시행령 제10조 반영
보증과목	보증번호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비고																								
보증과목	보증번호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가지급금																									
보증과목	보증번호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비고																								
보증과목	보증번호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가지급금																									

현행	개정안	비고
* 이자,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담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도 예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사장	년 월 일 양도 예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사장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u>채무조정의 요건, 요청절차 및 방법</u>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생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u><붙임1>로 교체</u>	시행령 제10조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기존 제도나 내용 개정 조항 외 내규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표현정비 조항은 전후대비표 기재 생략